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안철경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
 -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음
-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경협·교역보험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11년만의 4. 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경우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것 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10년 5·24 조치¹⁾에 이어 2013년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되 었으나 금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한 간 경협과 교역이 재개 및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결과 가 중요한 변수임
- 그동안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기업들의 불안정한 기업경영 환경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新남북경협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의 안전장치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개선 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추가되어 국내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협 및 교역보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민영 보험회사도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북한 관련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 협 보험에 참여하며 향후 북한보험시장 진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남북경협 관련 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임.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였음

2. 교역·경협 보험제도 운영 현황



가. 개요

- 경제협력사업보험(이하 ‘경협보험’) 및 교역보험은 이 같은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²⁾의 형태로 2004년 도입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임
 - 2003년 8월,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후 민간경협 활성화 및 남북 간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북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북한의 신용도 및 수입자 신용조사·사고조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수출보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역·경협보험제도가 도입됨
- 경협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재산보험, 자동차 및 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에 의거 북한보험회사에 의무가입(제6조), 경협관련 정치적 위험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은 사업재개 시 반환해야 함
- 경협·교역보험의 관리주체는 통일부이며, 정책심의기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기금수탁관리기관이자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나. 보험상품 종류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³⁾
 - 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함
 - 반면,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기업이 당사자 간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

2)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의 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제8장 교역·경협보험,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교역보험 취급기준

3) 경협보험은 해외투자보험과 유사하며, 교역보험은 해상적하보험 또는 이해보증보험의 성격과 유사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

-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줌

〈표 1〉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의 주요 종목 및 보험대상

구분	보험 종목	보험 대상
경협보험	지분 등 투자보험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지연
	권리 등 투자보험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교역보험	선적 후 반출보험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 전 반출보험	반출한 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보험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위탁가공설비보험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반출 원부자재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납품계약 체결된 위탁가공품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person/guideservice/PU211.do>)

다. 운영형태

- 경협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수용위험, 송금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불가항력위험 등과 같은 비상위험(非常危險)이 해당됨
- 한편, 교역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2〉 경험보험과 교역보험 담보위험

경험보험	교역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②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 ③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④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해당 경험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⑤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⑥ 남북당국 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⑨ 수용위험: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⑩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주: 교역보험의 보험종목에 따라 담보위험 범위가 다름

(1) 선적 후 반출보험: ①~⑦, (2) 선적 전 반출보험: ①~⑧, (3) 반입보험: ①~⑧, (4) 위탁가공설비보험: ⑨~⑩

자료: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 고시 제2017-2호); 교역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4호)

■ 보험계약한도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재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험보험은 70억 원으로, 교역보험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만, 교역보험 중 납품이행보장보험의 계약한도액은 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한편, 경험보험의 부보율⁴⁾은 70% 또는 90%로, 교역보험은 70%로 설정되어 있음
 - 단, 교역보험 중 납품이행보장보험의 부보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음

■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은 각각 0.5~0.8% , 0.3~1.0%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 특별 할인을 적용함

- 경험보험의 보험요율은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0.7%로 책정되었으나, 가입률 제고 목적으로 2007년 0.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9년 보험요율 근거조항 마련 이후 0.6%로 상향조정하여 2016년까지 유지됨⁵⁾

4) 부보율이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을 의미함

5) 김종현(2017), 「남북경험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표 3〉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의 운영 형태

구분	경험보험	교역보험
계약한도	기업 당 70억 원	기업 당 10억 원 (납품이행보장보험: 5억 원)
보험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등 투자보험: 지분 취득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 · 권리 등 투자보험: 권리 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 당시 평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후 반출보험: 선적금액 · 선적 전 반출보험: 반출계약금액 · 반입보험: 입금대금 · 위탁가공설비 보험: 선적금액-감가상각분 ·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반출원부자재 금액+위탁가공비 ·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납품계약액
부보율	경제특구지역: 90%, 기타지역: 70%	70%(단, 납품이행보장보험: 10%)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요율	0.5~0.8%(중소기업 할인적용: 25%)	0.3~1.0%(중소기업, 교역실적기준: 할인적용)
보험료	보험계약관계 성립금액 × 보험요율	보험계약관계 성립금액 × 보험요율

주: 1)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의 부보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보율을 적용함
 2) 경험보험의 보험금액 5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요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요율을 적용함
 자료: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 고시 제2017-2호); 교역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4호)을 기초로 작성

3.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가. 부보대상 위험 범위

-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의거 북한보험회사에만 가입해야 하므로 기업 휴지 등 리스크를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국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경험보험은 북측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사업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재가동 시에는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임
 - 개성공단 폐쇄조치 직후 통일부(2016)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손실액은 7,779억 원으로 나타남⁶⁾

6)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3월 17일~2016년 5월 10일까지 총 3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이 9,446억 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 원임 (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그 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 추진현황 점검 및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마련”)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1년여 동안 입은 총손실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⁷⁾

■ 사업 정지 후 재개 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은 부재한 실정임

〈그림 1〉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

〈주요 항목별 피해액 규모 추산(2016)^{1),2)}〉

(단위: 억 원)

구분	정부	개성공단 기업협회
투자(토지, 건물, 기계 등)	5,088	5,654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917	2,317
위약금	633	1,100
개성 현지 미수금	141	375
합계	7,779	9,446

〈개성공단 폐쇄조치 1년 이후 피해조사 규모(2017)³⁾〉

(단위: 억 원)



자료: 1) 개성공단기업협회 보도자료(2016. 3. 11), “개성공단 비대위 발표-피해금액 추산”
 2) 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3) 연합뉴스(2017. 2. 7),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나. 보상한도의 적절성 및 보험금 산정

■ 경험보험은 2004년 도입 이후 보상한도를 확대하였으나,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업별 보험가입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2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 50억 원, 2009년 70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함
- 그러나 과거 보험사고 패턴을 볼 때 경험보험 관련 보험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커 현행 보상한도로는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2,945억 원으로 1사당 28.3억 원 수준이었음

7) 연합뉴스(2017. 2. 7),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공단 업체 절반은 개점휴업 상태””

-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험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0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하였고, 약 1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⁸⁾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

- 보험사고 지역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존재함

다. 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운영 효율성

■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은 각각 0.5~0.8%, 0.3~1.0%로 해외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의 요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교역·경험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의 경우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최고 연 1.5%까지 요율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임⁹⁾

■ 또한 경험·교역보험제도 운영 목적을 대북거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하나, 정부지원의 형평성이나 이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지원율 45%, 한도 17.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짐¹⁰⁾

8) 정유석(2017), 『개성공단 실증분석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모색』, 통일부 연구용역

9) 김종현(2017), 「남북경험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10) 통일부 보도자료(2016. 5. 27),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 결과”

4. 검토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도개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단계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며, 아울러 기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험참여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담보범위 확대, 보상한도 증액, 적정 보험요율과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험기업에 대한 실질적 위험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위험, 태업 등 상품개발 또는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초기 투자 이후 추가 공장 또는 설비 확장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부족, 실물자산의 화재, 가스 사고배상책임 등 재물·책임보험 등 투자위험 외에 실물자산 관련 물적담보에 대한 보험상품이 필요함
 - 개성공단 기업의 화재,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은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 10. 11) 제6조에 의해서 공업지구보험회사, 즉 북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극히 일부 기업들은 과거 사고 시 손해사정 및 보험금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¹¹⁾
 - 북측 보험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 보상에 대한 불신 제거 등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공동으로 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함
 - 기업휴지보험과 같이 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손실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북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 또는 지시로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부당한 과세, 파업, 태업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험담보 재검토 등

- 현재 운영 중인 경험·교역보험 상품의 주요 과제인 보상한도, 보험금 산정방식, 적정 보험요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경험·교역보험에 대해 보장한도금액과 부보율이 낮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경험보험 참여기업에

11) 개성공단 기업 면담결과(2015)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¹²⁾

-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경협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을 결정하는 미평가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보험가입을 미리 합의하는 기평가보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입률 제고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기업등록 신청 시 경협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긴급운전자금 수혜 기업은 경협보험 및 교역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함

■ 향후 남북 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여 교역·경협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나 해외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및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북한의 정치적 위험, 남북 보험관련 규정, 낮은 요율 수준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았음
 - 남북 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정도 가능해져 민간보험회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AIG, Lloyds 등 해외 대형보험회사가 정치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요율은 경협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¹³⁾ 적정수준의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지급보험금(재원)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외재보험(XOL), 위험대체수단(ART) 활용이 필요해 보임
- 보험 누적가액이 크지 않고 국내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 규모를 고려하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북한과의 경협 관련 보험상품의 운영에 국가재보험제도¹⁴⁾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Lloyds 등 해외재보험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할 것임¹⁵⁾ **kiri**

12)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경협보험 실태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90% 이상이 투자자산 보장을 위한 한도액 및 부보율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신동호·이재열(2016),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제34권 1호

13) 신동호(2013),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경협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p. 42~43

14) 국가재보험은 일정 수준까지 민간이 부담하며, 그 수준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증(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정책성보험제도에 활용됨

15) 현재 북한이 미국과 UN의 제재대상국가(sanctioned countries)이기 때문에 해외재보험회사들과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별첨 1〉 남북경협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실적

■ 2016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총 112개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 중 79개사(가입률 64.2%)와 개성공단에 부지 등을 분양받았으나 생산활동을 영위하지는 않은 기업이 33개사임

-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사에는 자본잠식(20개사),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지급받았던 경협보험금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14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았으나 토지를 소유한 22개사와 영업소 등 11개사 등도 경협보험에 가입함

〈별첨 표 1〉 남북경협보험 실적 현황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수	9	7	31	94	147	159
가입금액	4,873	11,688	93,559	316,244	512,148	529,305
보험료	13	46	188	323	1,131	1,62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수	149	147	98	108	112	8
가입금액	515,694	508,634	316,588	367,189	379,781	17,450
보험료	1,698	1,679	1,026	1,173	1,337	350

주: 연도 말 기준이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계약이 해지됨(예: 2016년에 104개 업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8개 업체(112-104) 만 계약이 남음)

자료: 수출입은행

■ 반면, 교역보험은 경협보험에 비해 보험가입조건이 불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특히 5·24 조치 이후에는 교역량과 관계없이 실적이 전혀 없음

-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자인 진출기업들이 대체로 영세한 상황에서 재고 자산, 원부자재 등 가입명세를 개성공단에 반입·반출할 때마다 매번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고, 관리 전담조직을 두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다 관리역량도 미흡하기 때문임
- 또한 교역보험의 보장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별첨 표 2〉 남북교역보험 실적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1	1	2	3	2	2	1
건수	1	1	4	23	10	5	3
금액	68.6	66.3	98.4	2123.4	927.2	848.9	652.0

자료: 수출입은행

■ 경험보험과 교역보험제도 도입 후 2016년까지 거수된 보험료 총액은 각각 105.9억 원, 47.8억 원임

■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경험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총 3차례임

- 정부는 2011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성공단 공동투자자 6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 등 총 46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함¹⁶⁾
- 2013년 4월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급된 경험보험금은 총 1,761억 원이며, 총 140여개 보험가입 기업 중 59개 기업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이 결정됨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보험금 지급은 총 104개사 2,945억 원으로 1사 당 지급보험금은 28.3억 원 수준임¹⁷⁾

16) 통일부 보도참고자료(2011. 3. 23), “개성공단 공장투자 6개 기업 경험보험금 등 지급 의결”

17) 보험금 지급 외에도 기타 지원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5,833억 원임(통일뉴스 2017. 11. 10)

〈별첨 표 3〉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및 반납 현황

(단위: 개사, 억 원)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보험금 반납		보험금 잔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 2010년 5.24 조치		7	50	-	-	7	50
·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59	1,761	44	1,307	19	454
세부내역	전액 반납	40	1,232	40	1,232	-	-
	일부 반납	4	108	4	76	4	32
	전액미 반납	10	363	-	-	10	363
	사업 포기	5	59	-	-	5	59
·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주)}		104	2,945	-	-	104	2,945
세부내역	가지급금	26	486	-	-	26	486
	본지급금	104	2,459	-	-	104	2,459
합계		170	4,756	44	1,307	130	3,448

주: 1) 가지급금 및 본지급금을 모두 수령한 기업은 1개사로 간주

2) 2018년 1개 업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추가되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험금 지급업체는 총 105개 업체임

자료: 수출입은행